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
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4. 12. 2.
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4년 11월 8일

나. 제출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4년 11월 15일

라. 상정일자: 제257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
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24. 11. 21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기획재정국장 정언택)

가. 제안이유

○ 미래교육재단의 운영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이사 임기 명확화 등 제도를 개선하고, 교육기관 지원 대상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,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, 초·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초·중·고등학교와 대학교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교육기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 이를 통해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, 구민들에게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가. “학교”의 정의를 유아부터 고등교육까지 포함하도록 함(안 제2조제2호)

나. 이사장 임기를 이사 재임 기간으로 명확히 하고,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사 및 감사 후보 추천 절차를 도입함(안 제8조제6항~제7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강용철)

○ 본 안건은 “학교”의 정의에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추가하여 사업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, 임원의 임기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,

○ 주요 내용으로

- 안 제2조(정의)에서는 현행 “학교”의 정의(초·중·고·대)에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및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추가하여 사업 수혜 대상을 확대함.
- 안 제8조제6항(임원)에서는 이사장 임기와 이사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이사장의 임기를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규정함.
- 안 제8조제7항(임원)에서는 임원 추천을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의 근거를 마련 함.

○ 검토 결과

-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교는 상위법(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,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학교)에서 정하는 것으로 현재 미취학아동은 사업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.
- 한편, 영등포구 제245회 2023년 제1차 정례회에서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」가 안건으로 상정되어 “장학재단”이 “미래교육재단”으로 제명 및 조문이 변경되기 전, 목적사업의 추가(지역인재양성) 등에 관한 사항을 영등포구 장학재단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승인을 받은 바 있음. 이때 재단 정관 제1조(목적) 정의하고 있는 “학교”의 범위에 속하는 학생(초·중·고·대)이 사업의 수혜 대상으로 되어있기에 미취학아동을 포함하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.
- 다만, 사업대상 확대로 기인하여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, 지원 규모가 같기에 추후 균형 있는 지원 대상 선발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됨.
- 다음으로 임원의 임기 및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, 미래교육재단에는 업무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해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으며, 이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20명과 감사 2명을 두고 있음.
- 현재 이사장의 임기는 조례 제8조제6항(임원)에 따라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, 이사의 임기는 재단법인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정관 제18조에서 조례와 같은 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나,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 시작 시점이 다르면 해석상 이견이 있을 수 있어 구체적으로 “이사장의 임기를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”으로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, 내실있는 위원회 구성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근거를 만드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.

4. 심사결과: 수정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	441	관 련 번 호
------------	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: 2024. 11. 21.

제 안 자: 박현우 의원 외 1명

1. 수정이유

- 상위법령인 「교육기본법」 상 “학교”에 포함되지 않는 어린이집을 본 개정안의 “학교”의 정의에서도 삭제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정함.

2. 수정내용

- 안 제2조제2호 내용 중 ““학교”란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,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,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”를 ““학교”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,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”로 한다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2호 내용 중 ““학교”란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,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,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”를 ““학교”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,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”로 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(생략) 2. “학교”란 「초·중등 교육법」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,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“학교”란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,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,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“학교”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,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“학교”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,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

제8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- ⑦ 선임직 이사 및 감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 -----.
1. (생 략) 2. “학교”란 「초 · 중등교육법」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,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	1. (현행과 같음) 2. “학교”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 · 중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,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
제8조(임원) ① ~ ⑤ (생 략) ⑥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<신 설> ⑦ · ⑧ (생 략)	제8조(임원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 ⑦ 선임직 이사 및 감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. ⑧ · ⑨ (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)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441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4. 11. .
제출자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미래교육재단의 운영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이사 임기 명확화 등 제도를 개선하고, 교육기관 지원 대상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,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, 초·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초·중·고등학교와 대학교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교육기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 이를 통해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, 구민들에게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“학교”의 정의를 유아부터 고등교육까지 포함하도록 함(안 제2조제2호)
- 나. 이사장 임기를 이사 재임 기간으로 명확히 하고,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사 및 감사 후보 추천 절차를 도입함(안 제8조제6항~제7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협의사항

- 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 - 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 없음
 - 3) 인권영향평가: 차별적 인식이 반영된 용어로 인해 인권침해 가능성 있음
 - 해당조항: 제5조(사업) 1항 중 “학생”이라는 표현 대신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용어(예: 청소년 또는 시민) 사용을 권장함
 - 수용여부: 미반영(추후 반영 예정). 현행 사업이 학교 지원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대상이 학생으로 제한됨. 향후 사업 확대 시 해당 조항을 개선할 계획임
- 라. 입법예고(2024. 10. 10.~10. 30./2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
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“학교”란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, 「유아교육법」 제2
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,
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

제8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
로 하며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⑦ 선임직 이사 및 감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“학교”란 「초 · 중등교육법」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,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“학교”란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,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 · 중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,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</p>
<p>제8조(임원) ① ~ ⑤ (생 략)</p> <p>⑥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</p> <p><신 설></p>	<p>제8조(임원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⑦ 선임직 이사 및 감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.</p> <p>⑧ · ⑨ (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)</p>
<p>⑦ · ⑧ (생 략)</p>	